

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
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폐지이유

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 폐지(법률 제6252호, 2000.1.28.)에 따라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에서 위임한 「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의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 폐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「구미시도시계획교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는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채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시행후 도시개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 회계에 귀속된다.

소관 실·과		도 시 과
입 안 자	과 장	최 규 호
	담 당	변 상 용
	담 당 자	김 태 영 (480-5413)